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2023.10.26.(목) 10:00
운영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2023. 10.

감사위원회

I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 조직



□ 인력

(’23.9.30. 기준)

구분	계	행 정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원	20	16	1	3	5	7	-	-	4	3	1
현원	16	12	1	3	3	5	-	-	4	3	1
과부족	△4	△4	-	-	△2	△2	-	-	-	-	-

기능

인권정책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및 인권정책 홍보
-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등 추진

인권보호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인권실태조사 추진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권협력팀

- 인권교육 운영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2023년도 예산

세입 예산 : 6,917천원

('23.9.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	전년 대비 증 감	%	비고
계	6,917	2,992	76.2%	
경상적세외수입	60	15	33.3%	
기타이자수입	60	15	33.3%	보조금 이자 반납
임시적세외수입	6,857	2,977	76.7%	
보조금반환수입	6,857	2,977	76.7%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세출 예산 : 624,850천원 ※ ('22년) 1,178,314천원

('23.9.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계	624,850	341,751	283,099	54.7%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34,578	27,962	55.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15,900	20,920	43.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39,310	32,190	55.0%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0	36,050	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48,600	106,200	31.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27,814	14,186	66.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6,476	524	99.6%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0	10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21,808	30,192	41.9%
기본경비	37,140	22,265	14,875	59.9%

※ 각종 용역 진행 중(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으로 용역 만료 후 집행 예정(11~12월)

소관 조례 및 위원회

□ 자치법규(조례 2, 규칙 1)

(’23.9.30. 기준)

연번	구분	자치법규명	제정 일자	최근 개정 일자
1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012-09-28	2022-12-30
2	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2013-01-10	2023-04-13
3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2015-01-02	2021-07-20

□ 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자문, 정책개선 권고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자문
 -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 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市 자치법규,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등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호선)
- 회의 : 연 4회 및 필요 시 수시 개최

②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기능)
- 임기 : 3년(연임 불가)
- 주요기능 : 인권침해사항 의결 및 시정 권고
- 구성 : 9명 이내(위원장 호선)
- 회의 : 월 1회 정기회, 임시회(수시)

II

주요 추진사업

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인권도시 서울」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지속 조성

□ 추진계획

- 시정에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 비(非)인권적 정책 등 개선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지킴이단 추진
- 인권적 행정지원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市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 추진실적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 및 시행계획 수립(3~5월)
 - －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를 위한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
 - － 시민공청회(1회), 市 인권위원회 심의자문(2회), 전문가 자문(6회) 등 이행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3회), 신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활동 전개
 -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10건)
 -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선발(26명) 및 현장방문(9회)
- 인권영향평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추진
 - － 분야별(안전, 보건)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추진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7~9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4차) 개최 : 12월
- 인권지킴이단 활동 : 10월
 - － 노인 양로·요양시설 내 비인권적 요소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1회)

작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 2133-6370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 6385 담당: 유춘상 ☎ 6387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가치 확산에 기여

□ 추진계획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례적 운영
-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추진실적

- 2023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3.10.16.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비고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권고	기각·각하 등	조사중	
249	22	227	30	5	22	3	전년도 이월사건(8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9회(정기회 7회/임시회 2회)
 -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 : 총 26건(권고 5건, 기각·각하 등 21건)
-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1회(주제 : 市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시 원격대학 학생 차별)
-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 실태조사 5건 추진 중
 - 인권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관(부서)에 정책개선 권고 등 시행 예정

□ 향후계획

- 2022 결정례집 제작 배포 추진 : 10월
 -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전파를 위한 2022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배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3회) 및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1회) : ~ 12월
 - 인권침해사건 심의·의결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2023년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위원회 자문·권고 : ~ 12월

작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 2133-6370 인권보호팀장: 김종오 ☎ 6377 담당: 김지영 ☎ 6379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市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시민 대상 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으로 인권문화 조성

□ 추진계획

- 市 본청·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 인권 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 온·오프라인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가치 확산

□ 추진실적

-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집합교육(17회, 990명 이수)
 - － e-인권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20개 과정) 실시 중
 - － ‘정보와 인권’ 주제 웹드라마 등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 (총 3편)
- 공개모집을 통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 일반시민·학생 등 공개모집을 통한 대면 및 온라인 탐방 병행 운영
 - ※ 대면탐방(7개 코스, 40회, 715명), 온라인탐방(5개 코스, 7회 175명)

□ 향후계획

- 인권교육 실시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 ~ 12월
 - － 직원 대상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및 교육 이수율 관리
 - －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완료 및 등재 (인재개발원·평생학습포털)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탐방코스 개발 검토 : ~ 12월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02-2133-63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정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9. 12. 31.>

④ 삭제 <2022.12.30>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5. 14.>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9., 2020. 10. 5.>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2의2. 삭제 <2021.9.30>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 9. 29.>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9.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9. 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 9. 29., 2019. 3. 28.>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2016. 9. 29.>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

구제위원회"라 한다)<개정 2016. 9. 29., 2022.12.30>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12.30>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⑦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3(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

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5(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2022.12.30>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신설 2022.12.30>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2.12.30>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16. 9. 29, 2022.12.30>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④ 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8., 2022.12.30>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의2(조사수행)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1조(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 위원 및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

1.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 9. 29.]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 삭제 <2022.12.30>

제23조 삭제 <2022.12.30>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5조 삭제 <2022.12.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9.>]

부칙 <제858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